

2021년 서울 관광·MICE 사업 대행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21조,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서울 관광 및 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이하 MICE라 한다) 사업의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서울 관광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관광 및 MICE 사업(이하 ‘대행사업’이라 한다)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범위)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재단”에 대행할 수 있으며, 세부사업은 [별지 제1호]와 같다.

1. 시민 여가관광 및 관광산업 지원
 2.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3.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협력사업
 4. 기타 서울관광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의 대행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대행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대행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대행기간은 2021년 협약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관리 · 운영) ① “시”는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재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행시키고, “재단”은 “시”의 승인을 받은 세부실행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다.

1. 사업의 기획 · 진행 · 홍보 · 대외협력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홍보물 및 보고서(홍보책자, CD, 결과보고서 등)의 기획 · 편집 · 제작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사항 등
- ② “재단”은 이 약정에 의한 대행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기획 · 준비 ·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5조(재산관리) ① “재단”은 대행재산을 관리 ·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재단”은 이 협약 체결 이후 대행사업과 관련한 시설물의 신 · 증축, 개 · 보수 또는 멸실하거나 주요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또한 대행재산에 포함하여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대행시설 및 사업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홈페이지, 운영 프로그램 개발, 사진, 인쇄물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권리를 “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 ①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단위사업[별지 제1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시”的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내에 “시”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승인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재단”은 제2항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시”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제2항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⑤ “시”는 제3조의 대행기간 중 제2조에 의거한 [별지 제1호] 이외의 사업을 “재단”에 추가로 대행하는 경우에도 본 협약에 의한다.

제7조(사업의 수행) ① “재단”은 제6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재단”은 과업수행 과정상 “시”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시”的 정책과 브랜드를 홍보하여야 한다.
- ③ “시”는 “재단”에 사업 관련 회의참석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최대한 성실히 응한다.
- ④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재단”은 본 사업 종료 후 각종 행사에서 제시된 의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사업성과 평가서·정산서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 출자출연법」, 「민법」,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효율성 확보를 위해 사업목적과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단”의 내규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지급 및 관리) ① “시”는 대행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재단”에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재단”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시”는 협약체결 후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재단”에 사업비 선금을 지급하되, 협약체결 후 “재단”의 청구에 따라 사업 시행 전에 총 “사업비”的 70%, 나머지 금액(30%)은 사업 완료 3개월 이전에 선금 집행률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③ “재단”은 “사업비”에 대한 별도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는 등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단”의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의 구성 및 지급요율) ①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시”가 “재단”에 지급하는 사업비는 사업원가와 대행수수료로 구성되며,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다.

- ② 사업원가는 대행사업에 실투입되는 직접 인건비 및 홍보·마케팅 비용 등 사업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실투입되는 직접 인건비란 대행사업만을 위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 ③ 대행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을 준용하여 사업원가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④ “시”가 “재단”에 [별지 제1호] 이외의 사업을 추가로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추가 대행사업의 규모를 감안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재단”은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대행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的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과 이자발생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입금 등) ① “재단”은 대행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대행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거나 대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 및 제3자 사용·수익으로 발생한 수익금, 후원, 협찬금에 대해서는 제6조의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시”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시”와 “재단”이 합의하여 차년도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협약이행의 보증 등) “재단”은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전액 또는 일부 반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에 반납할 것을 확약하는 문서를 “사업비”의 청구 시 함께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 · 감독) ① “시”는 대행사업과 관련한 “재단”的 업무를 지도 · 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때에는 대행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재단”에 요구하거나 “시”的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재단”的 업무상황 · 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시”가 자료, 회의참석, 보고 등을 “재단”에 요청할 경우 또는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할 경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는 “재단”的 대행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민·형사상 책임) ① “재단”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 사고에 대하여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재단”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재단”的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재단”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的 손해(소송 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 제16조(협약의 해지 등)** ① “시” 또는 “재단”이 본 협약서를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예정일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시” 또는 “재단”은 상대방이 보내온 해지 사유를 검토한 후 상호 동의하에 본 협약서를 해지할 수 있다.
- ③ 기타 본 협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쌍방 협의에 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제1항~제3항의 사유로 동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상호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17조(대행재산 등의 반환) “재단”은 대행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행재산(대행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 포함)을 “시”에 인도한다.

- 제18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 출자출연법」, 「민법」,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시”的 조례, 규칙과 “재단”的 정관, 내부 규정을 따른다.
-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재단”的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的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9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3조에 따른 협약기간이 만료 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

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재단”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월

“시”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 1부시장



“재단”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9층)



이 재



[별지 제1호]

2021년 서울시 관광·MICE 서울관광재단 대행사업(안)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대행규모	소관부서
계	16개 사업	8,420,500	
1	여행주간 운영	45,000	
2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	600,000	
3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지원금)	2,670,000	
4	MICE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200,000	
5	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대외협력계정)	100,000	관광정책과
6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 (환대주간)	200,000	
7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 운영	150,000	
8	장애인, 어르신과 함께하는 행복한 나들이	337,500	
9	서울형 안심 MICE 모델 구축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 계정)	400,000	
10	관광스타트업 육성 지원	451,000	
11	우수 관광상품 개발 운영지원	690,000	
12	해외핵심여행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200,000	
13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활성화 지원	356,000	관광산업과
14	서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894,000	
15	의료관광 활성화	927,000	
16	한류관광 활성화	200,000	